

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7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4. 7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청년의 연령을 조례상 알기 쉽게 명시하고, 매년 수립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일원화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의 연령을 알기 쉽게 명시(안 제2조)
- 나. 일자리 창출계획과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원화 조문 신설(안 제4조)
- 다. 시행규칙에 관한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제14조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6517호, 2023. 2. 16.)
- 라. 입법예고: 2023. 2. 6. ~ 2023. 2. 27.(21일간) / 의견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“추진하여야”를 “추진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반영하여야”를 “반영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창출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」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교육기관에 대하여”를 “교육기관에게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재정 지원)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협력하여야”를 “협력해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개인에 대하여”를 “개인에게”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<u>추진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제4조(청년일자리 창출계획)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계획(이하 “창출계획”이라 한다)을 <u>수립·시행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추진해야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노력해야</u> -----.</p> <p>제4조(청년일자리 창출계획) ①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해야</u> -----.</p>

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매년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창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제8조(교육기관과의 연계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0조(재정 지원)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울산광역시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 반영해야 ----.

④ 창출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」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.

제8조(교육기관과의 연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 교육기관에게 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재정 지원)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p><u>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</u>에 따른다.</p> <p>제11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긴밀히 <u>협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포상)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·단체·기업 또는 <u>개인에 대하여</u> 포상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<u>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1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협력해야</u> 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포상) ----- ----- ----- <u>개인에게</u> -----.</p> <p><삭 제></p>
---	--

근거법규

□ 「청년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2. ~ 4. (생략)

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발생이 예상되며, 조례 개정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정책사업단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성 명: 정순찬
- 연락처: (052)290-8322